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5

ECCK 백서 2025 회장 인사말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회장

2025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백서 발간을 맞아, 올해도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소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모든 위원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럽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ECCK의 활동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위원회와 포럼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에 뜻깊은 해였습니다. 6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강인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경제 여건은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정부'라는 기치 아래 새 정부는 주거, 금융, 복지, 고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회복을 국가 의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금융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개혁은 유럽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CCK는 한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세 가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국내 통합 해상풍력발전과 전력망 개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금융 투자 확대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유럽 기업은 강력한 기술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체결된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디지털 무역 조항을 포함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도 지속적인 무역 교류를 통해 한국 시장의 다양한 기회를 유럽 기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EU FTA의 완전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양측의 견고하고 상호 이익적인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CCK는 회원사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럽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ECCK 백서 발간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ECCK 백서 2025 총장 인사말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25년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백서 발간을 위해 시간과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기여해 주신 모든 위원회와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CCK 위원회는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럼은 주제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 70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20건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제기된 사안으로, 수년에 걸쳐 제안되고 있는 안건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만큼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18건은 기존에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보다 완결성 있는 제도와 규정으로 정비되기를 바라는 업계의 후속 제안입니다. 나머지 32건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항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유관 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행정적 접근을 기대합니다.

올해 백서에서는 처음으로 건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 및 통관 절차 관련 의견이 9건, 국제표준과 정합성을 맞춘 기준 개선이 18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이 5건, 처벌 관련 규제 개선이 35건, 기타 항목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적용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완화와 강화 양측의 의견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현장의 규제 체계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본 백서의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K는 지속가능성 시상식과 가축친화미래포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 유럽 기업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성공 사례 공유와 공동 과제 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CCK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서 작성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회원사와 관계사 여러분께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5

목차

ECCK 백서 2025 인사말 - 필립 반 후프 회장	p. 2
ECCK 백서 2025 인사말 - 스테판 언스트 총장	p.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소개	p. 6
백서 사용 안내서	p. 16
2024 리뷰	p. 17
ECCK 산업별 위원회 (포럼) 보고서	p. 25
항공 및 방위	p. 26
자동차	p. 28
주류	p. 34
화학	p. 39
화장품	p. 48
디지털	p. 50
에너지 및 환경	p. 53
패션 및 유통	p. 59
식품	p. 63
헬스케어	p. 67
인사 및 준법	p. 75
보험	p. 77
지식재산권	p. 80
주방 및 소형가전	p. 89
해양산업	p. 92
지속가능성	p. 97
조세	p. 98
부록	p. 106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입니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 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350 여 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11만 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 유럽계 기업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CCK는 회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ECCK는 유럽 기업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및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매년 발행하는 백서는 ECCK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에 소통 창구가 되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내 및 글로벌 CSR 파트너(자선·봉사 단체)들과 멤버사들을 연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및 유럽자유무역협회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ECCK는 전 세계 유럽상공회의소 모임인 유럽 비즈니스 월드와이드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EBOWN) 멤버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념 및 활동 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의 대화 촉진을 통한 공정하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 보장
-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 경제 및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소통 촉진
- 회원 및 파트너 대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실천 촉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헌
- 유럽 비즈니스 및 문화 대사로서 활동



필립 반 후프(벨기에)
회장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외이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AXA 코리아 사외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ING은행 한국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ING은행 한국 대표로 부임 전까지, 싱가포르에 위치한 ING은행 아시아 태평양 금융기관영업부 대표를 맡았으며, 또한 201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30년 이상 은행(banking) 산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서 15년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이사회 수준에서 보험사, 자산 관리자, 증권사 및 국부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립 반 후프 회장은 벨기에 국적으로, 2021년 ECCK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으며, 2023년 6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유럽상의(Eurocham in Singapore)에서 금융서비스 위원회 회장을 2018년까지 맡았고,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싱가포르유럽상의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마티아스 바이틀(독일)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마티아스 바이틀(Mathias Vaitl) 부회장은 2005년 뉘르팅겐-가이슬링겐 응용과학대학(HfWU)에서 자동차 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 관리 전공으로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자회사에서 딜러 네트워크 사업부 비즈니스 매니저로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독일, 중국, 체코 공화국 시장의 디지털 서비스, 판매, 교육 및 자격 인증,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자동차 산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퍼 스테니우스(핀란드)
부회장
레달
대표

퍼 스테니우스(Per Stenius) 부회장은 2010년부터 레달의 회장 겸 CEO이자 레달 코리아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략 및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맥킨지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 액센츄어(Accenture), 스트라토스 벤처스(Stratos Ventures) 및 여러 기술 기업에서 주요 경영진 및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전기공학 박사 및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헬싱키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비즈니스 및 과학 저널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αSSIST)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전략 분야 객원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레달 코리아는 2020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문고영(캐나다)
부회장
RWE Renewables Korea
대표

문고영 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독일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RWE Renewables Korea의 공동대표이자 CountryChair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해상풍력,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폐기물 에너지화, 수처리 멤브레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기술 및 사업 개발 분야에서 28년 이상 산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LG, LS, POSCO, 공주대학교, 한양과 같은 한국 기업에서 기술 개발 리더, 교수, 사업 개발 리더로 일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SCI 저널에 23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컨퍼런스, 포럼 및 기관에서 강연자 및 이사회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주제에 대해 60회 이상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RWE Renewables Korea는 2021년에 ECCK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문고영 부회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가영(한국)
이사
크노엘 코리아
대표

이가영 이사는 한국 국적으로, 2016년 1월 크노엘 코리아(Knoell Korea)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경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크노엘에 합류하기 전 10년 이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주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크노엘에서 화학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나 마리아 보이(루마니아)
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이사

루마니아 출신의 안나마리아 보이(Dr. Ana-Maria Boie) 이사는 현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이사 및 인체의약품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보이 대표는 글로벌 및 리전에서 경영, 마케팅, 영업, ESG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카롤 다빌라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한 후, 티핀 대학교에서 Executive MBA 과정을 수료하는 등 의료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09년 베링거인겔하임에 합류한 이후에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며 핵심 사업을 이끌었으며, 회사의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인 Sustainable Development for Generations(SD4G) 전략 수립에도 기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한국 내 보건의료 산업 발전 및 업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온 인게 브라텐(노르웨이)
이사
에퀴노르 코리아
대표이사

비온 인게 브라텐(Bjørn Inge Braathen) 이사는 2023년 5월부터 에퀴노르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에서 거주 및 근무한 바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응용 지구물리학 이학 석사(a Cand. Scient. degree)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의 북해 탐사 부서에서 경력을 시작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및 남미에서 28년 이상 폭넓은 국제 경험을 쌓아온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에퀴노르의 고위 임원입니다. 그는 이사회 직책과 자본 시장 고문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환경에서 다양한 부서 조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탐사 전략 및 포트폴리오 부문 부사장, 북미 탐사 부문 수석 부사장, 국제 육상 탐사 부문 수석 부사장, 신재생 포트폴리오 상업 및 가치 평가 부문 부사장을 거쳐 에퀴노르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로 부임했습니다.



로버트 브로웰(영국)
감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로버트 브로웰(Robert Browell) 감사(Treasurer)는 영국 국적으로, PwC 한국 회원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서비스 기관인 삼일회계법인PwC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유럽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PwC 영국에서 경력을 시작해 첫 10년을 보낸 후, 2012년 PwC 한국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 ECCK 조세 위원회 위원장과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특별 고문(Special Advisor)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 반드롬(벨기에)
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요한 반드롬(Johan Vandromme) 이사(Trustee)는 벨기에 국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고문(Senior Advisor)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도 같은 직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사건 담당관(Case Handler)으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베이징 대표부로 합류하여 무역 및 경쟁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 대표부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다시 베이징 대표부에서 경쟁 및 법무(Competition & Justice) 정책을 담당한 후, 2020년 김앤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스테판 언스트
총장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총장은 2023년 10월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을 맡았습니다.

언스트 총장은 약 20년간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에 재직하였으며, 광범위한 마케팅 및 경영 경력을 바탕으로 유럽, 남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바이어스도르프 한국 지사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그후 2015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독일 기반의 글로벌 제약운영 부사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액센츄어 송의 스타트업 기업인 마케비전 코리아(Mackevision Korea)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19년부터 최근까지 차벨파트너스 건축사무소(Zabel+Partners architechts)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습니다.

언스트 총장은 독일 국적으로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다양한 글로벌 환경과 문화에서 28년간 비즈니스에 몸담은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입니다. 앞서 1995년에 영국 미들섹스 대학 유럽경영학 학위와 독일 유럽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김보선
부총장

박안숙
상무, 위원회 총괄, 화장품 / 헬스케어 위원회

서효경
이사, 주류 / 식품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노금채
이사, 회계

사무국
위원회 관리

임창훈
이사, 자동차 위원회

김시윤
매니저, 보험 위원회 / 조세 / CFO 포럼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 지식재산권 위원회

신혜원
매니저, 항공 및 방위 / 에너지 및 환경 / 지속가능성 위원회

김경현
매니저, 화학 / 디지털 / 물류 위원회

장유리
팀장,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조혜은
팀장, 멤버십 및 대외협력

김희정
매니저, 멤버십 및 대외협력

심혜원
팀장, 미래 개발 포럼 / 마케팅 및 이벤트

이정현
매니저, 가족친화미래 / 관광 포럼 / 정책 이벤트

조보경
매니저, 인사 및 준법 포럼 / 인사

안드류 밀라드
부산 지부장

김예지
매니저, 해양산업 위원회

위원회 및 포럼

위원회 및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에게 현재 해당 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 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정보 교류의 구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시장 동향과 규제 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CCK 백서(ECCK White Paper)
- 기업환경조사 보고서(Business Confidence Survey)
- 디지털 매거진(ECCK Connect Magazine)
- ECCK 회원명부(ECCK Membership Directory)
- 주간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해당 백서는 2025년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70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기업 환경 및 규제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ECCK의 17개 산업별 위원회 및 주제별 포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 간 우호 증진과 양측 정부 간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해당 백서에 제기된 모든 이슈는 관련 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주요이슈
규제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소개.

건의사항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권고사항 설명 소개.

**관련규정/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이 작년 백서에 이어 ‘재건의’ 또는 ‘개정’되었거나 2025년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임을 나타냄.

백안숙
이사
화장품 위원회

화장품

7
총 주요이슈

1.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제언도

이슈요약
현행 화장품법은 20여년전 약사법에 유래되어 제정되었으나 현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화장품 산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변화의 관점에서 제언도가 필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화장품의 효능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화장품의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개발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한 화장품 산업에서는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평가 및 실증제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제도나 역량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규제 환경하에, 한국 화장품 산업이 제품 개발 속도 및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하에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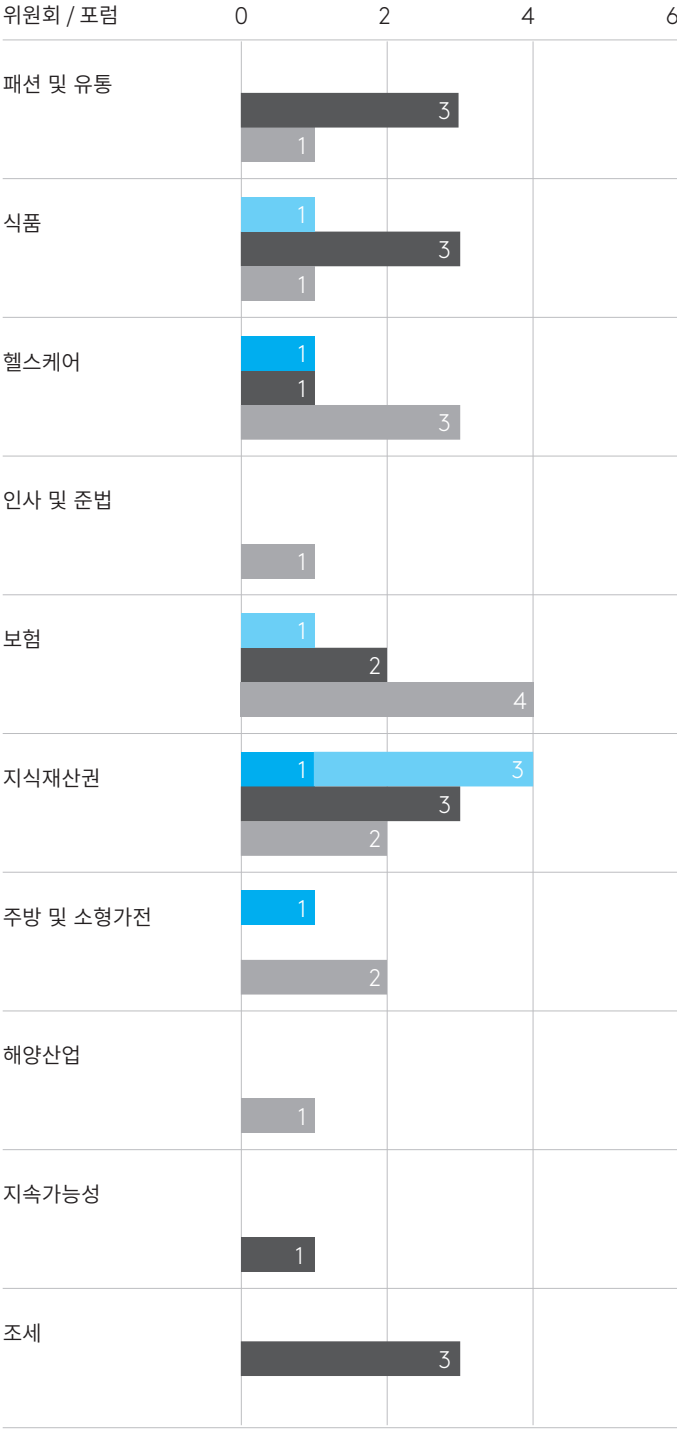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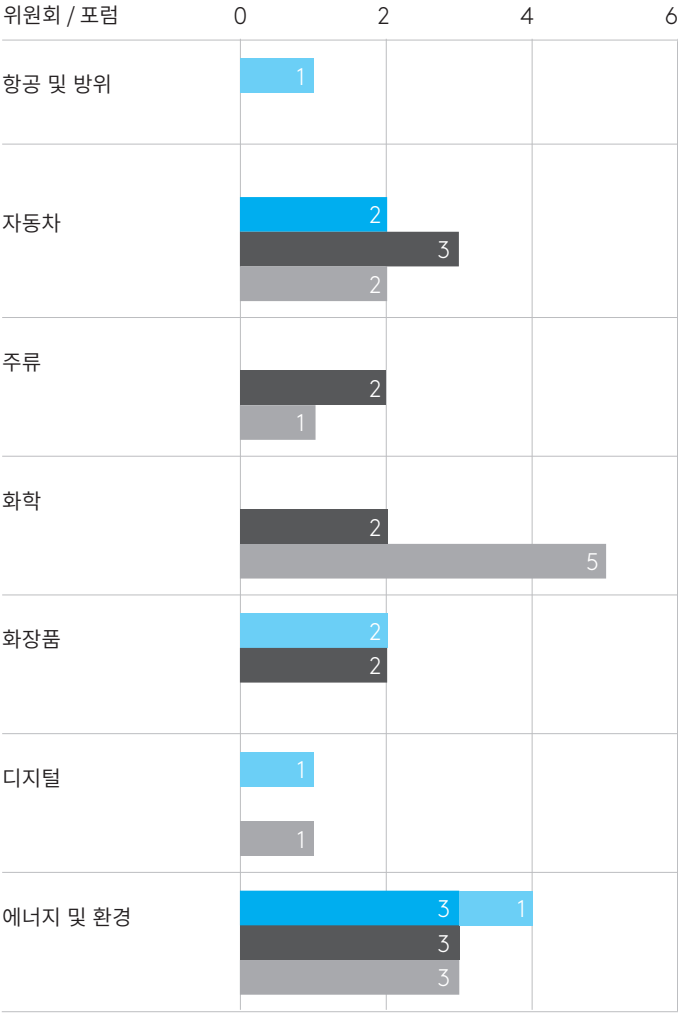
2.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 도입

이슈요약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회사 명과 그 소재지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 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장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표시 기재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65—화장품

2024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7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73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규제 이슈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산업별로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 리뷰

2024년도 각 산업별 규제이슈 및 건의사항(총 73건)과 이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 및 ECCK의 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수용	 안건 종료(완료)
 부분 수용	 안건 종료(중단)
 미수용	 진행 상황 점검
 장기 검토	 재건의

위원회 / 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항공 및 방위	1 산업협력 할당제 (컨소시엄) 요건에 대한 개선		
자동차	1 한-EU FTA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 제출의 대상 차량 범위		
	3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4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 준수를 위한 유연성 부여		
	5 전기차 보조금 평가 혹은 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6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7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주류	1 모든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확대		
	2 국제 표준 및 관행과 합치되는 주류 라벨 규정 도입 요청		
	3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위원회 / 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화학	1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확인서류 서명 주체 확대		
	2 국내 제조 제품의 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 허용		
	3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안		
	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5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6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7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한·유독물질의 수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복규제		
화장품	1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2 기능성 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3 자외선차단지수 (SPF) 표시 범위 확대		
	4 화장품 표시 광고 행정 처분의 완화		
디지털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2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안		
에너지 및 환경	1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2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3 해상풍력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4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	↻
	5 군작전성 이슈 관련 사전 협의 행정기관 창구의 마련	⊗	⚡
	6 부유식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	↻
	7 해상풍력설비의 가중치 변경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	✔	✔
	8 풍력고정가격입찰 낙찰시 복수의 Off-taker와 계약 허용 필요	✔	✔
	9 3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용전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 완화	✔	✔
	10 군사기지법 보호구역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관련 훈령 개정	↻	⚡
패션 및 유통	1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	↻
	2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 표기방법	⊗	↻
	3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	↻
	4 가족제품 표시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	↻
식품	1 수입식품 완제품에 사용된 물리적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	⚡
	2 수입식품의 '연월' 표시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기 방법 변경	⊗	⊗
	3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시 해외제조업소 공문의 인정 범위를 확대	✔	⚡
	4 내용량 감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검토	⊗	⚡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범위에 관한 제언	⊗	⊗
	헬스케어		
	1 혁신적 의료 제품의 가치 저하 및 불공정 경쟁 환경	✔	↻
	2 혁신 약물 가치 지속적 저하	↻	↻
	3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	↻	↻
	4 완전한 GMP 평가 상호인정과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한 한국-EU 상호인정협정의 진행 및 생물학적 제제의 중복적인 품질검사 개선 관련 규정의 구체화	↻	↻
	5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 제도의 조정율 표 등급 세분화	⊗	⊗
인사 및 준법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
보험	1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폐지 또는 적립방식 변경	⊗	↻
	3 1,200% rule 적용 강화	↻	↻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통보 기한 제정 및 심사결정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반영 요청	↻	⚡
	5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 기준의 유연성 제고로 손생보 참조순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요망	⊗	⊗
	6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	⚡
	7 IFRS4 기준 업무보고서 작성 폐지	↻	↻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	↻
	4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	↻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마련	✓	↻
	6 해외 플랫폼 직구로 인한 수입 위조품 증가에 따른 조치 마련	⬇	⚡
	7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8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	↻
	9 저작권법 로열티 부과 방식의 국제기준 조화	⬇	⚡
주방 및 소형가전	1 기구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정밀 검사 실시 제도' 검사일 기준 완화 요청	↻	↻
	2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대상 기준 완화	✓	✓
	3 가정용 저울에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표기방법	↻	✕
해양산업	1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	⚡
지속가능성	1 한국의 녹색전환계획의 영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개발	✕	↻
조세	1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	⚡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건	✕	↻
	3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시 적정 과세가격	✕	↻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항공 및 방위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나 실무자 간 협의 채널 운영 등 구체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안의 완성도뿐 아니라, 절충교역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절충교역지침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

총 주요이슈

1.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소통 방식 개선

이슈요약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 절충교역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충교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소통이 보다 상호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의 구조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때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다소 제한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안서 준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모델을 구성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항공 및 방위 위원회는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열린 소통에 항상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절충교역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소통 방식의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안의 방향성이나 구조에 대해 반복적으로 원칙적인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의 정책 목표와 해외 기업의 산업 역량 간 조화를 도모하고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모두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관련 지침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시행 전에 유럽계를 포함한 외국계 항공방위 산업계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등 협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6

총 주요이슈

1. 사고기록장치 장착 고지 의무 관련 처벌 규정 완화

이슈요약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 장착 고지 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차량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의 장착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2월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사고기록장치는 대부분의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착이 의무화된 장치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도 제작사의 준법 부담은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규정을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규정을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2항, 제79조 제3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의 처벌 규정 완화

이슈요약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FAS)에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작자가 연간 판매한 전체 차량의 대당 평균 배출량이 환경부가 정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동차 제작자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배출량 기준 달성 여부는 경기 상황, 소비자 수요 등 자동차 제작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자동차 제작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는 과도한 규정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벌칙 규정을 현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부과되는 제재 수단을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 3, 제89조 제7의2호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이슈요약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용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양이 많으므로, 친환경 중대형차 보급 촉진은 교통 부문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유럽계 화물자동차 제작사는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전기 화물차, 수소엔진 화물차)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분에서 친환경 상용자동차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 승합자동차와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용 충전 시설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전용 충전 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형 상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향후 평균 온실가스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유럽계 상용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한국 내 상용자동차 제작사는 향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의 온실가스 제도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4년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를 통해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중대형 화물자동차의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현재 수소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기 등 다른 동력원의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의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건의사항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및 시행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차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합니다.

- 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수소엔진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아울러 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용 충전 시설 확충과 충전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 마련

이슈요약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해 한국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국내 관련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특례 신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국내 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한-EU FTA 부속서 2-다, 제 6조(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시장에서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와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이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더욱이 한-EU FTA 관련 조항(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에 따르면, 신기술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신기술에 대한 인정 절차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4년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도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기술 특례와 관련한 유럽 자동차 제작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절차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 사항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국내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인정 가부에 대한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여 특례 인정에 대한 심사 기간을 3개월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6개월 안에 가부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특례 인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한-EU FTA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이 EU 집행위 측에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의 2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건 완화

이슈 요약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수입된 비순정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제작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관 보류 요청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이 수입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정 결과를 회신하고, 수입신고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현금 담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7일 이내)은 자동차 제작사가 관련 대응을 진행하는 데 촉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규정된 기간 내에 이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품이 구동 계통인 경우에는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감정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서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현금 담보 제공이 필요하나, 담보 금액이 상당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규정된 기간인 7일 내에 현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현금 외 다른 종류도 포함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건의사항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수입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해 통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7일에서 14~30일로 더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통관 서류를 요청할 때 세관장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의 종류 중 현금 이외에 '납세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235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제14조
관련부처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관련부처	경찰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제도 추진	<u>이슈 요약</u>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 보조금 지급 요건이 점차 복잡해지고 강화되면서, 유럽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둔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의 사항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비재정적 혜택을 포함하여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승용차에 3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1. 주류 소매 면허자에 주류 전자상거래 및 배송 기회 확대

이슈 요약
2017년 4월, 전통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 전통주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수입 주류를 포함한 비전통 주류를 모두 전자상거래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제청에 따르면 전통주 출고량은 2017년 98만 9리터 케이스에서 2023년 260만 9리터 케이스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수입 주류 및 국내 비전통 주류 등은 수입업체나 국내 소매업체가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등 주류 관련 모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판매 구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주류 수입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 직구는 2018년 261억 원에서 2022년 3,440억 원으로 1,21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익숙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면 전통주 판매자를 제외한 국내 주류 사업자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주류 해외 직구의 급격한 증가는 SNS, 중고 거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 유통 증가와 표시 기준 위반, 세금 회피,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증가 등 규제 우회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차별적 경쟁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 기조와 상충합니다. 특정 주류만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구조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해외 직구를 가장한 비공식 병행 수입을 조장하며 한국 정부의 주류 규제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허용은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 다양한

제품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며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프리미엄 및 크래프트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류 전자상거래 확대를 논의할 때,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져오는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 가능성을 단점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부터 전통주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주류 거래는 한국의 연령 확인 시스템과 준법 인프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주류가 편의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한국 내 전체 주류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주 맥주, 막걸리가 이미 대부분의 유통 채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여 수입 주류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각은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선택권 확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장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 제한은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 불일치 문제를 심화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브랜드 가치 역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 (International Alliance for Responsible Drinking, IARD)의 디지털 판매 원칙이나 업계 주도의 안전장치 등의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주류 전자상거래가 효과적이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류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공정한 시장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을 주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모든 주류 판매업자가 동등하게 전자상거래 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규제 체계 마련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규제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필수 요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상기 기술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주류 규제 체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주세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개정

2. 주류 용기 음주 관련 경고 문구 규정에 대한 의견

이슈 요약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이유로 여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대부분 ‘안전한 음주는 없다(no safe level)’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 표시하고 있는 주류 용기 경고문에서 ‘과도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모든 종류의 음주가 위험하다는 경고문을 표시하게 하는 등 주류에 대폭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는 내용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음주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언제든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업계는 우려가 큼니다.

주류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해한 형태의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WHO의 <Global Alcohol Action Plan 2022-2030>은 2010년 대비 유해한 형태의 음주를 최소 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계획에 업계는 중요한 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건전 음주 캠페인 전개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J-커브(J-curve)’와 같은 과학적 연구는 적정 수준의 음주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유해한 형태의 음주(harmful drinking)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J-커브 연구는 가벼운 음주는 일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¹ 이는 2018년 <Global Burden of Disease 2016>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결론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일부 반박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와 건전 음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주는 사회문화 및 각국의 전통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만큼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이 유해한 형태의 음주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해한 형태의 음주가 아닌 모든 형태의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최근 입법 활동에 대하여 업계는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들과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더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Mayo Clinic (Alcohol use: Weighing risks and benefits, 2021),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Alcohol: Balancing risks and benefits, 2022), Public Health England (Alcohol-attributable fractions for England: An update, 2020, see negative fractions applied to ischaemic heart disease on page 32 and discussion on page 38)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류 위원회는 유해한 형태의 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주류업계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음주 운전’ 경고 문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협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음주 가이드라인 제정 및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신규

3. 발효 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이슈 요약

한국이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한 것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은 선진적인 세제 개편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제 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발효 주류(과실주)는 여전히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어 가격 변동성, 행정 비효율,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소비 위축, 높은 생활비 등 경제적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와인 가격은 유사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복잡한 유통 마진과 세제 왜곡에서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해외에서 구매 후 귀국하는 방법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이는 국내 공식 유통망 약화와 세수 누락, 시장 경쟁 왜곡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OECD 국가가 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같은 인접국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국제무역 경쟁력 및 세수 확보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주류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일부 저도주 혼합 주류의 제품 분류 변경을 통해 30%의 낮은 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 제9899호’를 발의하였습니다. 세제 공정성 제고라는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이는 주류 세제 개편이 부분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적·단편적 접근 방식은 세금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규제 복잡성 증가, 준수 어려움, 형평성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은 맥주와 유사한 알코올 도수와 소비 패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을 조장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및 다양한 종류의 와인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과실주를 포함한 모든 발효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주류 세제의 일관성 제고
- 세금 과소 신고 등 리스크 완화
- 재정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강화
- 가격 안정 및 시장경쟁력 제고
- 소비자 선택권 및 제품 다양성 확대

이는 다국적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세제는 국내 생산자, 특히 소규모 생산업자 및 수입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복잡한 세제 체계로 과도한 규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국내 생산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의 정책 건의로 이 안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나, ECCK는 다음과 같은 종량세의 장점을 강조하여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논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증가세의 행정 부담 및 과소 신고를 통한 잠재적 세수 회피 감소
-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소비자 선택의 질적 향상 유도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

본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업계 협회, 학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발효 주류의 종량세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주류 세금 정책의 명확성, 형평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조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세 중심의 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은 이미 증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혼합 과세 모델을 도입하며 성공적인 과세 체계 전환을 이뤘던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존 탁주·맥주의 종량세 개편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경제 회복력, 소비자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된 주류 시장 환경에 적합한 주류 세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규정	주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김경현
매니저
화학 위원회

화학

7

총 주요이슈

1.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이슈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도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령에 의한 중복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이를 산안법상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령 간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정의가 상이하여, 업계는 여전히 등록 및 규제 준수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은 법 제2조 제3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23-122호 제3조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반면, 산안법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시행령 제85조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 역시 화평법상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건의 사항

이에 따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학 위원회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는 화평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산안법에서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산안법상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산안법 시행령 제85조를 개정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2024-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 환경부 고시 제2023-122호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재건의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 사항 중복 규제 해소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제147조 제1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법 제11조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와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이 상이하여, 산업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신규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안법상 조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표면 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건의 사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를 삭제하고, 제1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 면제를 받은 경우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또는 면제 확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조사보고서 제출 제외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없애고, 환경부의 등록 면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범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51조 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재건의

3.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이슈 요약
화학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로 인해,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이하 ‘OR’)로서 물질을 등록한 회사가 동시에 다른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물질의 수입자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한 회사가 동일한 물질에 대해 OR과 수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OR로 선임된 회사가 수입자로서 동일한 물질을 다른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는 신규 공급자의 OR로 등록하거나 기존 OR등록을 철회한 후 수입자로 등록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입자가 OR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한의 배경으로 등록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수입 물량을 분할하여 낮은 톤수로 등록하는 이른바 ‘물량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OR이나 수입자로 등록한 것을 취소할 경우, 기업은 해당 물질에 대해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과 관련된 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자료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참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이 기존에 OR 또는 수입자로 등록할 당시 제출했던 자료, 즉, 환경부가 동일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행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의 자료 소유자에게 막대한 외화를 반복적으로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기존 등록 건을 전부 취하 후 재등록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등록 비용 부담은 물론, 일정 지연과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해외 공급자를 다양하게 두어 화학물질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은 산업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타 국가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가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OR과 수입자 자격을 병행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는 의도적으로 물량을 분할해 등록하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여러 건의 하위 톤수 등록보다 단일 상위 톤수 등록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이슈 요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통칭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제품 내 전성분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의무이며 (제110조 제1항),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도 성분 정보 제출 대상(제110조 제2항)입니다.

다만, **수입자에 한하여**, 국외 제조자가 해당 제품에 유해성 분류 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분 정보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 제조자가 통상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로 간주하고 있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질과 혼합하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 위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물질 정보 제출 의무가 국내 제조자에게 부과되는데, 위 예외 조항은 수입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국내 제조자는 최종 제품에 대한 전성분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된 제품의 성분 정보를 국외 제조사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외 제조사는 자사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성분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법적 준수 의무와 지식재산 보호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공급원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제품의 사용 방식(완제품 사용 vs 원료 가공)과 법적 지위(수입자 vs 국내 제조자)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국외 기업과 국내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업에 제약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통상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제품들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외 제조자들은 국내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나, 현행 규제는 제품의 사용 방식과 협업 구조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례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인 A사가 국내 제조사인 B사에 유해성 분류가 없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B사는 A사의 제품을 원료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성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A사는 자사 제품에 영업비밀인 물질 정보가 있는 관계로, 성분 정보 대신 유해성 분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LoC를 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오직 수입자만 물질 정보가 아닌 LoC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법 준수를 위해 물질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건의 사항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정보' 제출 규정이 국내 '수입자'와 '제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국외 제조자'에게만 허용된 LoC 발행 및 제출을 국내 제조자에게도 허용하거나
- 수입 제품의 MSDS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7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이슈 요약
 영업비밀 물질은 연구실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사용되고 폐기되어 근로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수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계에서 연구·개발은 빠른 적용 및 판단 등 시간과의 싸움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 현행 절차는 전체적인 속도를 늦추고 연구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전달 체계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유해성 정보와 안전조치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영업비밀 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대체 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으로 기재되나,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취급량이 적어 근로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고, 현행 체계상 이미 충분한 안전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 없이 대체 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1조
------	-------------------------------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재건의
6. 선임 신고증 사본 전달 간소화 요청	이슈 요약 산안법 시행규칙 제166조 제5항은 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화평법상 선임된 자(OR)와 다른 역할을 수행함)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에게 선임 신고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업무 수행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할 때, 신고증 사본까지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정보’란에 선임된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MSDS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통해 연결된 제품명과 MSDS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자가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각국에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가 선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증 사본만으로 기업 정보나 담당자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KMS)상으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에 의한 업무 수행 결과 제공’ 기능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수입자는 이를 통해 제품별로 국외 제조자의 정보 및 MSDS번호, 수행 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신고증 사본 전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별도로 선임증 사본을 전달하고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선임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KMS에서 제공되는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에 의한 업무 수행 결과 제공’ 기능만으로도 정보 전달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바, 선임 신고증 사본 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5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 제공의 의무를 삭제 및 제6항에 하기 문구 삽입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스템 기반의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신규

7.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이슈 요약 2024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이하 ‘안내문’)'을 통해 흡입 노출이 예상되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유해성 자료 제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u>제형·용법상 흡입 노출 시 제품 내 함량이 0.1% 미만이면 유해성 자료 제출 면제, 0.1% 이상이면 제출</u> ※ 위해우려물질(함량 무관) 및 알레르기 물질(함량의 총합 0.01% 이상)은 노출 경로 등에 관계없이 유해성 자료 제출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향료 구성 성분 중 위해우려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유해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화학물질안전원은 향료의 개별 성분 중 위해우려물질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함량에 상관없이 향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유해성 자료 제출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료는 이미 기존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및 신고 제품에 함유되어 수년간 소비자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살생물제품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자료 제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반 생활화학제품은 유독물질, 알레르기 성분 등에 대한 유·위해성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지만, 살생물제품은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자료 구비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 유예 기간이 2025년 말까지인 1그룹 제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해성 자료의 인정 범위 역시 불명확합니다. 단순한 유해성 분류 표시만으로도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분류의 근거가 되는 시험 결과나 원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안내문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료 성분 관련 유해성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향료 유해성 자료 제출 함량 기준 재설정 대부분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향료는 전체 함량의 1%를 초과하지 않으며, 향료를 구성하는 개별 성분은 제품 내에 1~100ppm 존재하나 이마저도 대다수는 10ppm 미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 값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방법에 기재된 화학물질 확인 또는 함량 표준시험법에서도 정량 한계를 각각 10ppm, 50ppm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낮은 수치는 국제 기준에서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분류 표시 및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에 따르면 급성 독성에 대한 한계 농도는 1% 이하, 발암성 혹은 생식독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0.1% 이하로, 이 기준 미만이면 유해성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0.1%라는 기준은 단순 행정 편의로 설정된 수치가 아니라,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노출 가능성에 기반한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입니다(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또한 EU BPR(Biocidal Product Regulation)에서도 향료 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유해성 자료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어 SoC(Substance of Concern, 위해우려물질) 대상이라 하더라도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실질적 노출량을 근거로 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향료의 (인체 유해성) 자료 제출 대상을 **개별 성분이 제품내 0.1% 초과한 경우**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환경부의 해석대로 '향료 구성 성분 중 위해우려물질의 경우만 유해성 자료를 제출'이 현실화 될 경우, 일부 향료 성분이 SoC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유해성 자료 제출 및 위해성 평가까지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향료 물질 중에 SoC기준(분류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분류)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독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SoC로 구분하고 유해성 자료에 기반한 위해성 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유해성 자료 제출 기준 합리화

향료 개별 성분에 대해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뢰도 2 이상의 6-pack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급성경피독성의 경우에는 대체시험법(QSAR 또는 Read-across)으로도 자료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뢰도 요건의 예외적 허용
- 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RIFM) 등 국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서 발행한 자료의 수용
- 경구독성값을 기반으로 경피독성값을 추정하는 방식 채택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이미 피부 과민성이 확인된 물질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유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 사항에만 기재로 같음
- 자료의 제출 목적이 향료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 향료 성분의 유해성 분류 표시 수준의 정보 제출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건 완화

관련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국립환경과학원, 2024.04.18.)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화학물질안전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화장품

2

총 주요이슈

1. 화장품 표시 기재 중 해외 제조원 표시 개선
- 이슈 요약
현행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 ·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추가로 기재 ·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제조원 정보 또한 한글 기재가 요구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안내 목적이 정보 추적성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 주소지의 표시 언어 혹은 국제 통용 언어(영어)로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에도 포함된 제조원의 정보가 영어로 기재되나, 근거 서류와 부합된 정보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의 발생 시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책임 판매업자가 대응해야 하며, 책임 판매업자를 통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원산지 및 제조원의 명칭 이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정보 과부하로 인한 역기능(우선 정보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제조원 주소 표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 위원회는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로 기재가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이는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수용된 안건으로 확인되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소가 아닌 해외 제조원 주소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2. 라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신규

2. EU에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된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선

이슈 요약
2023년 7월 26일 유럽화장품규정(EU Cosmetic Regulation)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EU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된 화장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통관을 위해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그룹명 중 국내에서 한도가 지정된 물질의 경우 그룹명에 포함된 개별 성분과 함량을 별도의 서류로 제출 후 통관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된 유럽 규정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조성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한된 표시 면적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교차 감작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그룹화하여 그룹명(grouping nam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그룹명들은 <유럽화장품원료집>과 <국제화장품원료집>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5가지 성분 외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국내 규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기재되었으므로 제조 증명서에 표시된 그룹명은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 위원회는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에 대하여 그룹명(EU grouping name)이 적힌 서류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국내에서 한도가 지정된 물질을 포함하는 그룹명인 경우, 그룹에 속한 물질의 총함량이 국내 한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제조원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수입통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통합공고 제 31조 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3. 마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신규

디지털

2

총 주요이슈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이슈 요약
국가정보원은 국가망보안체계(N2SF)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개편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loud Service Assurance Program, CSAP) 요건을 개정한 바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공공기관 인증 요건을 상·중·하 등급으로 차등화, 물리적 망 분리 요건 완화, 그리고 ‘하’ 등급 인증에 대한 국제 암호화 기준 인정 확대 등이 있습니다.

위의 개정 사항은 제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의 개선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운용하는 시스템인 ‘하’ 등급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즉, 개정 내용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의미 있게 개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시스템 중 일부만 ‘하’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외 대부분은 ‘중’ 또는 ‘상’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외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하’ 등급 요건에 물리적 망 분리 및 암호화 기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데이터 및 운용 인력의 국내 상주, 검증필 국가 표준 암호화 기술 요건의 해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디지털 위원회는 국방, 안보, 민감한 건강 정보 등과 같이 가장 민감한 정부 시스템에 한해 ‘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스템에만 데이터 상주, 암호화 기술, 물리적 망 분리 등의 요건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 또는 ‘하’ 등급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및 인력의 국내 상주,

암호화 기술 요건 등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평가 요소로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행처럼 이분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전체적인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법안 제안

이슈 요약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은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여 소비자 경험을 크게 바꿔 놓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수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생 제품 또는 솔루션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OS 기업의 플랫폼에서 앱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드파티(third party) 개발자는 대부분 플랫폼 자체 앱 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어 플랫폼 사용이 강제되는데, 플랫폼은 이들에게 수익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서드파티 개발자의 경우 앱 수수료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등의 주변기기를 제조할 때에는 OS에 대한 기술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OS 기업 소속 제조사에는 모든 기술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에 그 외 제조사는 제한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이러한 피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OS의 내장 자체 앱을 서드파티 앱보다 우선시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소비자가 기본 설정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존 OS에서 다른OS를 사용하는 기기로 자신의 데이터(사진, 파일, 음악 등)를 옮기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폰 메시지 표준(Rich Communication Services, RCS)이 있음에도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간에 상호 메시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반독점법 또는 공정경쟁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독점적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배적인 모바일 OS 플랫폼에 대한 사전 감독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 회사에 법적으로 명확하고 사전에 정의된 의무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년에 추진하였던 법안의

재입법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플랫폼법(DMA)을 채택하여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 제공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 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을 통과시켜 2024년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2024년 6월에 통과시켜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신혜원
매니저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총 주요이슈

에너지 및 환경

1.
계통연계 정보 공유
방안 제안

이슈요약

2024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통연계 정보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망 재분배 사업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에게 배분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나, 당초 요청드린 **‘풍황 계측을 위한 투자 결정 전 계통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마련’**인 본 안건의 요지와 상이합니다.

건의사항

본 안건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전력에서 계통 정보를 대중 혹은 사업자들에게 공개
- 대안으로, 발전사업 허가 전 사업계획 초기에 사업자가 계통연계 가능 여부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혹은 한전에 사전검토 창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 마련

관련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이슈 요약

관련 규정 제8조에 의거해 발전사업 허가 대상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측기 활용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은 제한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경우 육상풍력 계측기 설치 면적(계측 타워의 경우 400m² 내외) 확보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승인후 계측기를 6개월 이내에 설치하면, 계측기 반경 2km (약 12,561,000m², 또는 380만 평)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우선권을 기간 제한 없이 보유했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추가 복구비 납부와 구비 서류 제출만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알박기’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 사항

계측기 유효 지역은 계속 활동 당시 필요한 면적 대비 수만 배의 면적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할 권리 및 우선권이 확보되는 만큼, 장기간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국공유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계측기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허가를 말소하고, 다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 풍황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관련부처	부지 중복 관련 적용 기준 제 8조, 제 9조
건의사항 조치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신규

3.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이슈 요약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건에 따른 지역 편중 심화로 안정적인 계통 운영 및 재생에너지 접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고정 접속 용량을 관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재생에너지 출력 예측 기반의 유효 출력 감시 및 제어를 통해 고정 접속 용량을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연 접속(Flexible Interconnection) 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접속 도입 시 유연접속 적용 여부 및 구체적 조건 관련 내용을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유연접속 도입 시 이용 개시일, 상업운전 개시일, 연도별 연간 발전 제약 상한 등을 구체화하여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과 공급 인증서 매매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풍력 고정가격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에 대해 유연접속 적용 여부가 금융 종결 이전에 이용계약서에 반영되어야 금융 종결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제어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 (예상 제어량, 예상 제어 시간 등)이 있어야 예상 상업운전일 (COD) 이후 대출 상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금융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관련부처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력거래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민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육상 송변전설비 건설 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적용

이슈요약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육상 송변전설비 건설에도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 등의 과도한 반대로 전기설비 외 부대공사 인허가가 지연되어 전체 건설 일정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큼니다.

따라서 민간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에도 무분별한 공사 지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 특례(국가기간전력망법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따라서 다음처럼 크게 두 가지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항에 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제3조(사업 시행자)의 대상이 ‘송전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와 동일하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제3조(사업시행자), 제17조(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 특례)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6호,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항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력시장과·전력산업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민간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의 전원개발촉진법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수립

이슈 요약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육상 송변전설비(공동 접속 설비 등) 건설에 대한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가능 여부 공식 확인 경로는 격년마다 발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반영 결과가 유일합니다.

각 계획의 차수별 발표 기간 사이에 민간 발전사업자의 송변전설비가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고 인허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수의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획 반영 가능 여부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가능 대상 여부를 공인된 기관 또는 특정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 배경과 관련하여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14p. 붙임1 발전소 계통연계 기준)에 명시된 바, 발전사가 건설하는 공동 접속 설비가 설비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상세 확인 절차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서 또는 한국전력 관련 부서를 통하여 민간 발전사업자가 공문 또는 별도 수립된 공식 절차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반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지역 수용성 확보 등 기타 요건 충족에 대한 사항은 필요 시 조건부로 기재 가능).

아울러 장기송변전설비계획상 민간 발전사 건설 공동 접속 설비의 설비계획 반영 조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6p.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기준(안)

관련부처

●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14p. 붙임1 발전소 계통연계 기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 발전소 접속설비 설비계획 반영 기준

(중앙급전발전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기의 접속설비

(비중앙급전발전기)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중 한전이 건설하는 접속설비는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발전사가

건설하는 공동접속설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설비계획에 반영

- 개별 발전사가 공동접속설비 용량의 50% 이하로 사용
- 공동접속설비는 한전이 관리하고, 후발사업자 접속 희망시 한전 관리하에 공동접속 추진
- 송주법 지원사업, 유지보수 비용은 발전사 부담

6.

부유식 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이슈요약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유식 해상 변전소와 관련된 산업부(한국 전기설비 규정) 및 전기안전 공사(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유식 변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의 사항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발전설비 공사 계획 인가’를 2026년 3분기에 받아야 하며, 동 공사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KESCO)에 ‘사전 기술 검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기술 검토는 통상 1~2개월 소요되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대한민국 최초 및 글로벌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할 때 기술 검토에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 2분기에는 사전 기술 검토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전까지 KEC(기술 기준) 및 KESC(검사 기준)에 부유식 해상 변전소의 기술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7.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이슈 요약

현행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실질적인 입지 여건보다는 가장 인접한 육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최대 약 100km 떨어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와 같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풍속, 수심, 해저 지질 등 기술적 입지 여건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 해상풍력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50% 일괄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방식은 사업 여건에 따른 합리적 요율 산정이 아닌 정률 적용 방식으로, 정책적 유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국가계획 기반의 해역 지정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제도와 연계하여 별도의 산정 기준 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역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체계 내에서 정책 또는 용량 기준의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는 국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특례 조항이 현재 신규 사업자에 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발전사업자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관련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이 가능하도록 동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아래와 같은 변경(안)을 포함시키기를 제안합니다.

1안 현재 지가 적용 방식*과 매출 및 설비용량 대비 적용 방식** 중 점용 사용료가 저렴한 방식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최근접 해안지역 토지 공시지가 기준

** 발전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점용·사용료로 부과하거나 발전단지용량(MW) 당 일정액을 점용 사용료로 부과

2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상한 가격을 지정하여 사용료가 상한 가격 이상일 경우 상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3안 EEZ(Exclusive Economic Zone) 지역에 대한 점용·사용료 산정 및 적용하는 방안

관련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8. 해상공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
수용성 심사 기준
구체화

이슈 요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2022년 7월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설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이후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식별 절차가 모호하고, 어업인의 경우 아무 증빙 자료 없이 수협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검토 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해양수산부에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위원회

패션 및 유통

4

총 주요이슈

1. 생활용품 정보 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 구체화

이슈 요약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확산에 따라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의 제품 정보 제공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속 가능 제품을 위한 생태 설계 규정(ESPR)'을 통해 2026년부터 섬유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원재료, 제조과정, 공급망,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가 QR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가정용 섬유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제조 일자 및 일련번호 외 항목에 대해 QR코드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정보 제공 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제한된 라벨 공간 내에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모두 병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디자인 훼손, 착용감 저하, 소비자 가독성 저해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보 표시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패션 및 유통 위원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섬유제품(의류, 신발 등)에 대해 필수 정보는 기존 표시 방식을 유지하되, '취급상 주의 사항' 등 선택 항목에 한해 QR코드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보 제공 효율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소비자 편의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의류제품 등에서 취급 주의 사항을 포함한 표시 항목의 QR 대체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 확대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과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방법

이슈 요약
2022년 11월 개정된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 기준에 따라 신발류 제품에도 걸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 사항 등의 중요정보를 개별 제품에 박음질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신발은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고, 부착 가능한 공간이 협소하며, 곡면이나 깊이 등 구조상 제약이 많아 일괄적인 물리적 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한국 전용 공정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완제품 상태에서의 박음질은 제품 손상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정비와 인건비 상승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실제 이행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 품질 유지 간 균형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표시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본 권고 사항에 대해 수입사는 생산·공급 현실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조적 제약과 제품 특성상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업계는 해당 권고가 품질 저하, 생산공정 복잡화, 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조와 유통 현실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주 1. 걸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 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라는 조항 중 ‘주 1.’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이슈 요약
관세청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르면, 브러시(HS 9603), 속눈썹 뷰러(HS 8203), 거울(HS 7009) 등의 품목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현품에 표시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은 대부분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제품의 외포장이나 단상자에 기재된 원산지 정보를 통해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구조로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는 원산지 정보의 노출이 소비자 권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특히 화장품용 브러시와 같은 미용 도구의 경우, 제품 구조상 현품에 별도

표시를 부착하거나 인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포장을 개봉하여 표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손상이 발생하거나 위생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 실무상 어려움이 큼니다. 또한 별도 표시 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이 추가되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통관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품목에 대해 외포장상의 원산지 표시만으로 수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의 사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라 현품 표시 대상에 포함된 브러시(HS 9603) 품목 중 화장품용 브러시에 한해 칫솔과 동일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품목은 동일한 HS 코드 내에 포함되며, 소비자 구매 방식·사용 목적·제품 구조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칫솔에 적용된 예외 기준이 화장품용 브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장품용 브러시 외에도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만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면 충분한 품목(예: 거울, 속눈썹 뷰러 등)에 대해서는 소매용 포장상 원산지 표시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표시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외 인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성질, 사용 목적,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고시 제6조 제2항 제1호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각주나 부칙을 통해 예외 또는 권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업체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가족제품 표시 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이슈 요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은 제품 추적을 위해 가족제품에 ‘제조 연월’ 표시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제품은 대부분 해외 제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국내에 수입되며, 제품 단종 주기가 짧고 모델이 다양해 제조 일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업체는 제조사와의

언어·시차 등의 장벽으로 제조 일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시 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물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이상 발생 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연월, 최초 판매 시즌, 납품 일자 등 실무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로도 동일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용 섬유제품이나 선글라스 등 유사 품목은 복수의 표시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 가능해 규제의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가족제품에만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건의에 대해 제품 안전성,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추진 예정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가족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연월 외에 수입 연월, 최초 판매 시즌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품 추적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수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 (가족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서효경
이사
식품 위원회

식품

3

총 주요이슈

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소통 방법 개선 요청

이슈 요약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제조업소에서 수입업체에게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분 해외의 외국인 담당자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나, 현지실사를 통보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의 영문 번역본 부재로 현지실사 관련 문의 사항을 수입업체로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체시설을 공개해야 하는 공장 입장에서 공문에 명시된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위탁 받아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제조업소는 현지실사 진행 시 사전 준비 서류 목록을 국문과 영문으로 미리 전달받으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 및 점검표는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별표 1-3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문만 존재하여 해외제조업소에서는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나, 연간 현지실사를 받는 수백 곳의 해외제조업체를 각 수입업체가 불안정한 정보로 각각 이해시키기보다, 현지실사의 주체인 주관 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게시하고 있어 해외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식품위원회는 한국에 식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1. <https://www.fda.gov/food/inspections-protect-food-supply/foreign-food-facility-inspection-program>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해외제조업소에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생산설비를 운영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위탁 받은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어로 게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고시의 영문 번역본을 발행하여 관련 웹사이트 혹은 별도 파일로 현지실사 대상인 해외제조업소에 송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작업장의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에도 함께 송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현지 실사 진행 통보 시 사전 준비 서류 목록, 해당 고시 별표 1과 2(혹은 3)의 영문본을 함께 송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와
신규

2.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검사 결과
통지 개선

이슈 요약

해외제조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 ①에 따라 현지실사 완료 후 실사 결과를 ‘적합’, ‘부적합’, ‘개선 필요’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점검표 항목별 세부 결과를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제조업소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평가 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해외제조업소에 공지하여 개선 요청을 하지만, 전체 평가 결과 ‘적합’의 경우 일부 부적합 항목을 공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제조업소는 개선해야 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수 수입업소: 동 고시 제6조 ③과 ④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완료 후 실사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만 통보하기 때문에 우수 수입업소는 평가 항목별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수 수입업소의 경우 등록 후 해외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우수 수입업소 등록 시 실시한 현지실사 상세 결과를 알 수 없어 이후 자체 점검 시 이전에 지적받은 일부 항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의 사항

해외제조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 ①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최종 평가 결과와 해외제조업소 국문·영문 점검 결과표를 함께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제조업소에서 실사 결과를 인지하고 식품 안전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우수 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 ③과 ④에 따라 현지실사 적합 결과 통보 시 실사 때 지적된 일부 항목을 함께 통보하

여 수입업소에서 추적 및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와
신규

3.
천연 향료 허용 범위
확대

이슈 요약

해외 규정 및 표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향료의 ‘천연’ 표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같은 원료를 해외에서는 ‘천연(Natural)’으로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시 대부분 합성으로 표기해야 하는 실정이며, 수출국에서 표기한 ‘Natural’이라는 단어를 가리기 위해 별도로 가림 스티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r Industry
3. Flavor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

유럽, 미국, CODEX, IOFI², FEMA³의 경우 사용 용매 및 첨가제 등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천연향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에 따르면 완제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경우 순수한 휘레, 주스, 추출물, 농축물 등만 천연향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조되어 유통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식품의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천연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유통되는 향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존제 등의 첨가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 따라 합성향료로 표기합니다.

합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수의 제품을 합성향료로 표시해야 하는 규제 환경은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천연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향료 개발을 저해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천연’ 혹은 ‘합성’이라는 표기를 바탕으로 향료의 안전성, 즉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CODEX 등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기원 물질, 허용 용매, 잔류 용매 기준 및 첨가 가능한 물질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천연향료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실제 식품 완제품에 천연향료를 사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식품위원회는 글로벌 기준과의 규제 조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용매와 첨가제에 대한 기준 확대 및 천연향료 표시 기준 완화를 건의합니다.

- 천연향료 제조공정 기준 확대: 글로벌 기준은 일반적 제조공정을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에서 허용함. (한국은 추출, 종류만 인정)
- 천연향료 허용 용매 기준 확대: 글로벌 기준은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에서 허용함. (한국은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헥산에 한함)

• 천연향료의 다양한 표시 허용:

예1) 천연향료로 표시했다고 해서 그 향 전체가 '천연'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100% 천연향료임을 보장하지 않음. (예: Natural Flavor with Other Natural Flavor, Natural & Artificial Flavor)

예2) CODEX에서는 Natural, Nature Identical, Artificial 단어를 조합해서 쓸 수 있음.

관련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박안숙

상무

헬스케어 위원회

헬스케어

5

총 주요이슈

1.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이슈 요약

신속 등재 제도 도입

최근 국내 의료진 100명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¹ 신약 등재 비율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고(한국 22%, 독일 61%, 일본 48% 등), 글로벌 신약 최초 출시 후 보험급여까지의 등재 기간도 길니다(한국 평균 46개월, 미국 4개월, 독일 11개월, 일본 17개월, 영국 27개월, 프랑스 34개월 등)². 국내 환자들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 A8 국가 평균(26.5개월) 대비 약 1년 반(19.5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에게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재 지연은 또한 다국적 제약사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의 혁신 신약 출시 지연(Korea Passing) 또는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건의료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 환경 개선

한국은 의약품상호심사협력기구(PIC/S) 회원국으로서 품질 기준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극복해 오면서 바이오 의약품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 이어 싱가포르와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2024년 2월)하여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 시스템 동등성이 인정되어 긍정적인 제약산업 발전이 기대되는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한-EU 간 상호인정협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허가용 희귀의약품 지정 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도 해외 허가 이전이라 안전성·유효성이 해외에서 검토된 적 없다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에 검토 및 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는 취지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에 비추어볼 때, 제외국 허가 여부와 별개로 적합한 자료 제출 시 검토 및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570>
2. PhRMA analysis of IQVIA MIDAS and country regulatory data. October 2022

아울러 최근 희귀 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ICH 기준에 따른 실시간 출하 시험(Real Time Release Testing, RTRT) 및 혁신 기술(innovative technology) 적용에 대한 수용 불확실성과 과도한 품질 자료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있어 희귀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빠르게 비용효과성 평가가 가능한 약제 및 혁신 신약 등의 경우 100일 내 등재(신속 등재) 트랙을 신설하여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 사업을 본사업화하여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기대여명이 짧은 질환) 치료제 등 급여가 시급한 약제가 혁신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우선 등재하고, 이후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선급여 후평가 등 혁신적 신속 등재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독일 사례 참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DREC)가 정한 대체 약제 가중평균 금액을 수용하는 약제는 우선 급여 등재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해야 합니다.

허가 환경 개선

안전한 GMP 평가 상호인정과 품질관리 시험 개선을 위하여 한-EU FTA 협정문(의약품, 의료기기 부속서 제5조 '규제 협력')에 따른 한-EU GMP 상호인정협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 대하여 해외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를 수용하고, 제출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희귀 바이오의약품 허가 시 ICH 기준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RTRT 및 혁신 기술 적용에 대한 명확한 수용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자료 보완 요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 2023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 규제 협력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6조 제4항
- 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별표 4, 별표 5, 별표 6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이슈요약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12위임 에도 불구하고,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가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 신약의 국내 수입이 지연되고, 신약 보험약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총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은 13.5%로 OECD평균 33.9%의 절반 이하이며,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한국과 유사한 A8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15~25% 수준에 불과³ 하였습니다.

한국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07년 설정된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임계값을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1인당 GDP는 2007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지만,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 신약은 기존 약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ICER 기준을 충족한 신약은 19개뿐입니다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8월부터 ICER 임계값의 탄력적 평가 기준을 신설했으나, 평가 범위와 적용 정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응증별 환급률 및 가중평균가 적용을 통해 신약의 적응증별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⁵. 반면 한국은 단일 약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제약사가 후속 적응증 출시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한국 환자들의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보험 등재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긴 가격 협상 과정을 통해 비시장적 가격으로 수렴됨으로써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한국 시장에서의 제품 허가 취하라는 원치 않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제도 (동일 약제 등재로 인한 직권 조정,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 범위 확대 인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 등)는 중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여 혁신 신약 및 신규 적응증의 보험급여 등재 지연,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코리아 패싱 등 혁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 수립과 장기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 기업 지정 기준은 국내 투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국적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한-EU FTA의 차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와 더불어 해외 대비 낮은 혁신 보상, 등재 지연, 낮은 약가 수준은 국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공장이 철수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도

3.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98>
4. 강혜영 외 4인(2024),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5. 한은아 외(2023).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_2023-2-0004

위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을 위해 혁신 보상을 반영한 약가 우대 및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헬스케어 위원회는 현 GDP,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ICER 임계치를 상향하고, 질병 중등도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유연한 평가 체계 도입을 건의합니다.

혁신 신약의 경우 ICER 탄력 평가 범위와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공개를 건의합니다.

다적응증 약제의 가치 반영을 위해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또는 가중평균가 적용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검토 후 정례화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건의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 폐지(예: 약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 및 축소 (예: 사용 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통합, 약가 인하 시기 통일) 등 중복적이고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을 간소화하여 혁신 신약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순환 환경 조성을 건의합니다.

혁신형 제약 기업 기준 개선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 보장을 건의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직접투자(예: 국내 공장 설립, R&D 센터 설립, 오픈 이노베이션)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및 약가 우대 정책 도입 (예: 허가·급여의 신속 병행 평가,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의 경우 제외국 A8 조정 평균가 인정, ICER 임계치 2~3배 상향 등)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한-EU FTA 부속서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2조(혁신 접근), 제3조(투명성), 제5조(규제 협력)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보건산업진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위험 분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이슈 요약

위험 분담 계약을 시행하는 해외 기준과 달리, 환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된 등재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외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신약 가치 할인 및 안정적 공급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위험 분담 계약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위험 분담제가 아닌 신약과 동일한 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시 비용효과성을 다시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재평가로 인한 신약 가치 하락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세 번째 재평가에 대한 단순화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예측 가능성 및 첫 번째, 두 번째 재평가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기준 확대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도 5년마다 고정된 재평가 주기로 중복 협상 및 약가 인하 부담이 발생하여 행정적 피로도가 크고 기업의 공급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험 분담을 적용한 약제의 후속 약제는 위험 분담 유형 평가 시 규정상 제한이 없음에도 선발 약제와 동일한 위험 분담 유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선발 약제와 후발 약제가 동일한 회사의 품목인 경우 위험 분담 변경으로 간주되고 다른 유형을 적용받기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기반 위험 분담의 경우는 위험 분담 기간 만료 재평가 시 계약기간의 환급 정보로부터 재정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 분담 유형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초 계약 유형에 구속되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적응증 추가 시 투여 기간의 상이함 등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위험 분담 적용이 필요함에도 기존 적응증과 동일한 유형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제네릭 등재 후 위험 분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오리지널 약제의 지속적인 국내 공급이 어렵습니다(제네릭 등재 후 실제 가격 기준 53.55% 약제 가격 인하). 위험 분담제(RSA)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복적인 사후관리 기준으로 인해, 특히 매출이 적은 희귀난치질환 RSA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환급형 약제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일 때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모든 중증 난치질환 약제는 총액 제한형 복합 유형 RSA를 맺고 있어 규제 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RSA 약제는 실재가 기반으로 약제비가 관리되지만, 계약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가 기반의 실거래가 조사로 추가 약가 인하 부담이 큼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헬스케어 위원회는 환급금에 부가가치세를 제외 하여 과부담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재평가는 약가 인하의 도구가 아니라 위험 분담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건의하며, 급여 확대 시에는 계약갱신 시점부터 재평가 주기를 설정하여 유연한 제도 운영을 건의합니다.

재정 기반 위험 분담의 경우 선발 품목과 후발 품목 간 다른 유형을 허용하고, 적응증 추가 및 재평가 시 위험 분담 유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검토 주체 등을 규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네릭 등재 이후에도 위험 분담 계약의 지속 여부를 공단과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일 경우 RSA 유형과 관계없이 경제성 평가 제출을 면제하고, 급여 확대 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었다면 협상 참고 가격에 경제성 평가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 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RSA 약제는 계약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 금액 조정 기준 •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1.8.3 사후관리 • 위험 분담제 약가 협상 세부운영지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병원체 분자진단 현장검사 활용 확대
- 이슈 요약
현재 감염병 병원체를 진단하는 다양한 병원체 포함 분자진단 검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검사료 중 감염검사의 산정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1차 및 2차 의료 환경에서는 이러한 분자진단 검사를 원천적으로 실시하지 못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해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에 대해서 등급에 맞게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낼 수 있어 임상 양상만으로는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영유아, 노년층, 면역 저하자 등)에게는 치료가 늦어질수록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감염을 진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로는 1종씩 검사하는 PCR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균과 미생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다중 분자진단 검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검체 검사 총사용량 >
- D6583(핵산 증폭_다.정성그룹3): 환자 수 1,537,826명/총사용량 2,105,899회(1종씩 검사)
 - D6802(핵산 증폭_나.다중그룹2): 환자 수 3,166,059명/총사용량 4,570,159회(6~10종 검사)

그러나 이 검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곳은 감염병이 발생하고 빠르게 전파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즉 1차 기관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검사 전문의가 없는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산정 지침의 제약으로 대부분 이런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다양한 병원체를 20분 내외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제품들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헬스케어 위원회는 다양한 병원체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의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정 지침을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서의 사용의 적극 검토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제2부 제2장 검사료 감염검사의 산정 지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보험급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 (RUO)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 이슈 요약
EU REACH 규정은 화학물질(RUO(Research Use Only) 시약 포함)이 제3조(23)에 따른 과학적 연구개발(SR&D) 목적으로 연간 1톤 미만 사용될 경우, 기존·신규 물질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합니다. 반면,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 조건의 물질이라도 면제 확인을 위해 분자식 등 민감한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유럽 제조사에 과도한 규제 부담과 기술 유출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헬스케어 위원회는 국제무역의 형평성과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적 연구개발(SR&D) 목적의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RUO 시약 포함)에 대해 신규 물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EU REACH 규정처럼 자동등록 면제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6.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C) No 1907/2006, Article 3 (23) SR&D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Guidance o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R&D)/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관련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3항, 제11조 제2항(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8조(정보의 제공 등)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화학물질 고시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조보경
매니저
인사 및 준법 포럼

인사 및 준법

1

총 주요이슈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추상적 확장에 대한 제한 필요

이슈 요약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대해 그러한 개념을 인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추상적인 확장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섭 대상 노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내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의 사항

이러한 외국 투자 기업들의 반응에 더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인사 및 준법 포럼은 사용자 범위 확대가 도급계약 부담 증가, 하청 노조의 파업 증가, 원·하청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와 법적 안정성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노사 협력보다는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개정안)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시윤
매니저
보험 위원회

보험

3

총 주요이슈

1. 자동차보험 피해자
본인 인증(QR) 법제화

이슈 요약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피해자 본인 인증 관련 법규가 없어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보도가 있었고, 그중 피해자 본인 인증 및 전자지불보증제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진료비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제12조4항)해 2024년부터 본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은 진행 중이나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본인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보험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피해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청구자의 QR코드나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잉여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본인 여부 확인은 본인 인증 시스템(QR코드), 신분증, 문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
신규

2.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

이슈 요약

현재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기조이지만,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 그룹 간 시스템 통합 환경에서는 점차 운영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험 그룹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인증 및 배포한 보안 솔루션(예: EDR, DLP, 취약점 스캐너 등)을 한국 내 법인이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국내 망분리 및 보안성 평가 규제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며, 동일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별도로 국내에서 추가 도입해야 하는 이중화, 중복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술적 불편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 보안 정책 일관성 미확보: 그룹 내 통합된 보안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국내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비용 및 운영 효율 저하: 동일 기능의 솔루션을 복수로 유지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며, 인프라 관리의 복잡도 또한 상승
- SaaS 및 신기술 도입의 구조적 차단: 글로벌 보안 솔루션은 대부분 SaaS 형태로 제공되지만, 망 분리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는 SaaS 사용이 금지되어 최신 기술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솔루션을 찾아야 함
- IT 인력 확보에 악영향: 글로벌 보안 인프라와 호환되지 않는 환경은 외국계 또는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채용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함

또한 글로벌 그룹 본사와 통합된 보안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법인은 보다 유연한 보안 통제 체계(예: 위험 기반 승인, 특정 정보 자산 등급별 통제 적용 등)를 기반으로 SaaS 도입 및 클라우드 활용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은 여전히 일괄적이고 정태적인 통제 기준에 묶여 있어 디지털 전환 속도에서 실질적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망분리 및 보안성 평가 제도는 기술적으로는 보안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해석이나 절차적 한계로 인해 혁신적인 보안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

첫째, EU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 또는 한국의 금융감독 기관이 자국 금융회사의 보안 솔루션을 그 나라의 보안 기준에 따라 승인할 경우, 상대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체결된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이 금융 보안 규정 개정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망분리 예외 적용 시 기존의 일괄적 승인 방식이 아닌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여 정보 자산의 중요도, 데이터 민감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도입되는 SaaS 보안 솔루션에 대해 과거의 보안성 평가 결과를 일정 기간(예: 3년) 동안 유효하게 인정하거나, 그룹 내 타 국가 법인의 평가 결과를 공유·인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그룹과의 보안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보험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이버 보안 체계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에 대한 가이드선 제공 필요

이슈요약

대체 보험 시장은 기존 전통 보험 방식에 의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자연재해 보험 및 맞춤형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발전 및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싱가포르·일본·홍콩, 미국과 영국 제외)과 비교 시 국내시장에서는 대체보험이 허용되는지, 또는 어떤 방법들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정책 방향이나 안내가 없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채권을 통한 자연재해(산불, 홍수, 지진 등)에 대한 새로운 담보 제공 기회 및 전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 사항

최소한의 ART 가이드선(예: 사내 보험, 자연재해 채권, 파라메트릭·구조화 보험 등)을 ART 모범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명확한 보험업 관련 규정이 없음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지식재산권

10
총 주요이슈

1.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슈요약
한국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대체로 낮아 법 집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위조품 유통 사건의 경우 50만~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및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위조 범죄 및 상습범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기준과 국내 실태를 반영한 양형 기준 조정, 즉 형량 범위 상향 및 최소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시점입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저작권 위원회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위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형량 구간 상향 조정과 함께 최소 벌금 기준(minimum fine)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반복적 위반이나 상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누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제시한 의견이 2024년 정부 회신을 통해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이 확인된바, 해당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대법원 양형기준
관련부처	양형위원회 기획운영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이슈요약
관세청의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건수·수량 모두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편물 적발은 80.3% 급감한 반면, 특송은 15.2% 증가에 그쳐 해외 직구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 추세와는 상반되는 단속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량 유입이 가능한 컨테이너 물류 경로는 적발 건당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전체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의 23.49%를 차지했음에도 실제 적발 비율은 1.5%에 불과해 단속 실적과 수요 간 괴리가 뚜렷합니다. 이는 스마트 판독 툴 등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현장 집행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세관에서는 감정장 및 보관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인력 충원 및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 보장도 시급합니다.

건의 사항
전국 주요 항만 및 세관에서 컨테이너 기반 단속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 X-ray 등 판독 설비 현대화, 대량 적발 대응이 가능한 감정장 및 전용 창고 인프라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 실적과 연계된 보상 체계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디자인권 침해 판독을 위한 스마트 툴(2020~2023년 개발)’의 2024년 시범 운영 결과와 함께, 컨테이너 통관 적용 가능성 및 전국 확대 계획을 권리자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235조 ● 관세법 시행령 제269조의2 ● 관세청고시「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이슈 요약
중국발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확산으로 EMS 기반 소량 화물 형태의 위조품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단속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관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보관 공간 협소 등 운영 여건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연 1~2회 성수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조품 유입

속도와 규모에 비추어 단속 체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위조품의 약 90% 이상이 특송·우편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소량 화물에 특화된 단속 전략 강화가 시급합니다.

건의 사항

EMS 및 특송을 통한 소량 화물 형태의 위조품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 확충과 압수품 보관 공간 확대, 세관 검사 센터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검사 인프라 및 위조품 보관 장소 마련 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공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연 1~2회 시행 중인 특송·우편물 대상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위조품 유입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속 일정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공유를 통해 상표 권리자가 통관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 이슈 요약**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위조 상품의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책임 기준이 미비해 대응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반 거래의 경우 판매자 익명성, 정보 미제공,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침해 게시물에 즉시 대응하거나 신원 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건의 사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정의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조 상품 게시물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대통령령·시행규칙 등)에 구체화하여 플랫폼의 책임 이행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실무 적용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삭제 조치 이행 기한과 결과 통지 시점, 상표권자의 정보제공 청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상위법에 포함되기 어려울 경우 시행령 또는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 마련 시에는 상표권자, 플랫폼 사업자,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규정 도출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슈 요약

위조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닿는 위조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93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유해 위조품의 국내 유입은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는 현재 경찰의 주요 단속 테마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관련 수사 실적이 사고고과 및 승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사관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위조품 단속이 성과로 인정되지 않아 내부에서 오히려 수사를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조품 유통 단속은 제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 '지식재산 전문 수사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관련 교육 커리큘럼조차 부재한 상황으로, 전문성 제고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건의 사항

1.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 평가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이 경찰 인사고과 및 조직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조품 유통은 국민 안전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임에도 현장 수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가 미비하여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배점 이상 또는 정량화된 성과 기준을 마련해 수사 업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지식재산 수사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신설

지식재산 침해 수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경찰청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전문 수사관 제도가 있으나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 역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CCK 등 민간기관은 교육 설계와 강사 지원을 통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실무 기반 강화를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 상표법
관련부처	경찰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6.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 이슈 요약**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은 국내 위조품 오프라인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CCK가 2025년 부산 시민 6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위조품 구매 경험이 있으며, 이 중 43%는 노점 및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 시장을 관할로 하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서울시, 서울중구청 및 특허청과 활발히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 결과, 관할 전통시장에서의 위조품 유통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위조품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음에도 경찰 내 위조품 단속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낮고, 지역 기반의 전문적 단속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처럼 위조품 유통이 빈번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위조품 단속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1. 단속 우선순위 지정 요청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위조품 유통 밀집 지역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위조품 단속을 수사 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에 근거해 적극적인 단속 및 조치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 전담 단속팀 신설 또는 확대

지역 특성과 시장 환경에 맞춘 전담 단속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 협업 사례처럼, 은퇴 경찰관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협업 등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ECCK 세미나 참여 협력 요청

ECCK가 개최하는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세미나에 경찰 인력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현장 수사 전문성 향상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부산중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이슈 요약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배상액의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의 일환으로 2011년 상표법에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행 규정은 침해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위조품 유통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또한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법정배상금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하여 위조품 1개당 (per item), 상표 1개당(per trademark)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동일 물품에 여러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누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며,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위조품 단속 및 억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상표법(Lanham Act)에 따라 최대 미화 200만 달러까지 법정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EU 및 일본은 실손해 중심 배상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온라인 침해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상표법에 따라 배상금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110조의2에서 정한 법정배상금 제도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법정배상금이 ‘물품 1개당(per item)’, ‘상표 1개당(per trademark)’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법조문의 구조를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고의적 대량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누적 배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침해의 고의성 및 규모를 반영한 손해배상 한도를 유연하게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EU는 실손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브랜드 가치 훼손까지 포함해 손해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실효성 있는 배상 체계를 적극 운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국제적 입법례와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제110조의2(법정손해배상)
관련부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산업재산보호정책과,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이슈 요약
최근 온라인 위조품 유통 채널 중 위조품 판매 단독 사이트(stand-alone counterfeit websites)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의 차단 심의 구조상 실효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전체 제품의 70~80% 이상 위조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명백히 위조품임에도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고가 각하되는 등 증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전체 차단이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이하 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전문 신고 건조차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분기별 심의 일정에 따라 장기간 지연되는 등 권리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절차 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건의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호원 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심의 이전이라도 우선 조치가 가능하거나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절차(fast-track mechanism)'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트 전체 차단을 위해 요구되는 입증 기준(예: 전체 제품의 70~80% 이상 위조품 확인)은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판매자가 명백한 위조품을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유통 구조와 시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증거 해석 기준 유연화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유사 디자인 (lookalike, 통칭 '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이슈 요약
최근 룩어라이크(lookalike, 통칭 'dupe')로 불리는 고가 브랜드 유사 제품이 정식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편집숍,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룩어라이크 제품은 로고나 브랜드명을 직접 모방하지 않아 전통적 의미의 '위조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디자인, 색상, 외관 등 전체적으로 정품과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총판사 및 정식 수입업체의 영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법률상 위조품이 아니므로 통관·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상 침해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의 대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상품 외관 모방'이나 '출처 오인 유발 행위'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 수사·행정 적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석 지침, 판단 기준, 사례집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룩어라이크 제품과 위조품 간 개념을 구분하고, 룩어라이크 제품이 야기하는 시장 질서 훼손과 소비자 혼동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룩어라이크 제품 유통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외관 모방' 및 '출처 혼동 유발 행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보완하고, 룩어라이크 제품에 적용 가능한 행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판례 및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자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 리포트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지침 개발 시에는 민관 전문가 및 산업계와 협의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정의) ● 상표법 제110조(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관련부처	특허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슈 요약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OECD와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위조품 유통 피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K-브랜드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 유통되는 위조품 대부분 해외 브랜드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브랜드가 입는 피해는 물론, 국내 시장 전체의 위조품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의 최근 5개년 위조품 적발 통계에 따르면, 적발 사례는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연구의 범위로는 전체 위조 유통 실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 산업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실질적인 경제 손실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등 주요 국제기구는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조품 피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및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특정 브랜드나 산업군에 국한하지 않고 위조품 적발이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섹터별 연구 체계를 도입하고, 연구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4년 7월 OECD와 협력해 발간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기업 중심의 피해 분석으로, 국내 시장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 브랜드의 피해 사례도 포함해, 전 산업군을 아울러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조품 적발 통계를 기반으로 피해 규모가 큰 산업군부터 우선 분석하는 섹터별 순환 발간 체계 또는 격년 주기 연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원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개선 방향으로, 일관된 데이터 확보와 산업별 특화 대응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없음
관련부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서효경
이사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주방 및 소형가전

3

총 주요이슈

1. 시장조사용 견본품 적합성 평가 면제 수량 확대

이슈 요약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 면제 범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는 3대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시장조사용 견본품은 한국 시장에서 제품 판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으로 판매용이 아닙니다. 또한 면제 필증 발급 후 2년 이내 폐기 증빙 또한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3대로 제한되어 국내 소비자 트렌드 파악, 설문조사 및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량이 너무 적어 소비자 선호도 파악과 관련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 안전 인증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 별표16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는 별도 수량 제한 없이 안전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는 기업이 시장조사를 통해 판매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을 고려하여, 시장조사 목적의 견본품 적합성 평가 면제 수량을 10대로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규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기구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개선

이슈 요약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구의 경우 식품 또는 용기·포장과 달리 정밀 검역을 받게 되면 식품 접촉 부위에 해당하는 모든 부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품이 많은 제품(예: 믹서, 커피 머신, 토스터 등)은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 재질, 색상 분류 등 검사 대상 관련 부품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 기간 필요
2. 검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품을 조달할 때 각 부품의 공급처가 다르고 생산 일정도 일괄적이지 않아 해당 수량을 취합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3. 5년 도래 후 첫 수입신고 일정에 맞춰 해당 완제품과 해당하는 모든 부품을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선적하여 들여오는 일정 조정의 어려움. 모든 부품이 준비될 때까지 출항을 보류하거나 보세 구역에서 대기 필요
4. 일부 부품이 기간 내 수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 불가. 이 경우 같이 선적된 신제품 또는 판매 계획에 맞추어 주문한 제품 등은 유통 일정에 큰 차질을 빚으며 브랜드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및 매출 손실 발생
5.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5년 주기가 한 번에 도래하는 제품이 많으면 다양한 제품의 모든 부품을 특정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기구는 원재료의 영향을 받는 식품과 다른 공산품이며, 용기·포장과 같은 단일·단순 재질이 아닙니다. 정밀검사 시기에 수입하는 제품은 관련 부품을 각 공장서 수량에 맞춰 따로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위해 사전에 준비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부품을 조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건의 사항

산업계가 기준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구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를 5년 도래 전 6개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5년 주기 정밀검사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임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건의는 5년이 도래하기 전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겠다는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다품목의 제품을 각 품목별로 기한 내에 EcoAS에 등록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실무상 현행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선언을 현행 수입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전년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일괄 등록하는 유연한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선언 등록 기한 변경 요청**
이슈 요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공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소형 가전제품 등 다품목이 제도 대상이 되었는데, 소형 가전의 특성상 신제품 출시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신제품 수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산업

4

총 주요이슈

1. 한-EU FTA EUR 6,000 수출 인증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 및 무역 왜곡 가능성—기준 현대화 제안

이슈 요약
현행 한-EU FTA에 따르면, EUR 6,000 이하의 수출 건은 인보이스에 간단하게 원산지 선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수출 건은 매 건별로 EUR.1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취득해 인보이스마다 인증 선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부품 및 중간재 등 소규모·빈번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인증 수출자 승인이나 EUR.1 발급에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되어 신규 기업이 초기 거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EUR 6,000을 초과하는 거래는 사실상 관세(약 8%)가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인보이스 금액을 EUR 6,000 이하로 조정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왜곡된 관행이 자리 잡을 수도 있어, 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EUR 6,000 기준은 FTA 체결 당시의 거래 환경을 반영한 것이나, 최근 글로벌 교역량과 고빈도 무역 구조 변화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시장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최근 체결된 FTA들은 변화하는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자 프로그램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상향 또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해양산업 위원회는 EUR 6,000 기준을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최소 EUR 200,00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출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중소기업과 고빈도 수출 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자 제도(예: 승인 수출자 제도)를 통해 여전히 규정 준수와 오남용 방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D 제2조(혁신 접근), 제3조(투명성), 제5조(규제 협력) ●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한-EU FTA 원산지 증명 관련 고시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FTA정책과, 관세청 통관지원국·원산지지원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해상풍력촉진법(OSW Promotion Act)

이슈 요약
해양수산업부가 부유식 해상풍력(FOW) 프로젝트에 선박안전법(SSA)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 외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률은 정부의 공식 절차 완료 후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포함되며, 시행 세부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업부는 당초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2024년 2월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된 SSA 개정안 초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를 선박이나 해양 이동식 시추 설비(예: 석유 시추선, 플로텔 등)와 동일한 검사 및 선급 체계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해양수산업부는 한국선급(KR), 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 BV),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같은 인정 단체(ROs)가 설계 승인, 건조 검사, 운항선 정기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가 해상운송이나 시추 활동이 아닌 재생에너지 인프라라는 점을 들어, SSA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 2월 SSA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후속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7일 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최신 개정본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양수산업부가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함하는 것을 철회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 새로 제정된 해상풍력촉진법의 체계 아래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유식 해상풍력의 특성을 반영한 전담 기술 및 안전기준 체계를 주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해양산업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설비에 대한 규제 주무 부처임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실효성 있고 견고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촉진법 집행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프로젝트 개발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3. 기술 기준, 승인 절차, 장기적 관리 체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공청회 개최, 백서 발간, 공동 실무 작업반 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선박안전법 개정안(공고 제2024-234호)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3.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 (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 지원 제도의 공정 경쟁 촉진

이슈 요약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은 한국 선주들이 신조선 건조에 널리 활용하는 금융 모델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선박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며, 통상 외국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을 계약해 상업적 목적으로 외국 기국에 등록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선박은 기국과 그 기국이 지정한 안전 인증기관 (Recognized Organization, RO)의 독립적인 검사와 기술 품질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박안전법은 외국 SPC-선주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안전 인증기관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현재 그 범위는 KR과 BV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선박 건조 전 과정에 적용되어 외국 SPC-선주가 필요에 맞는 선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다른 선급은 신조선 건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 SPC-선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KR과 BV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공정경쟁과 규제의 형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선박 인도 후 해당 선박(외국 기국 등록)은 한국 선주에게 5~15년간 나용선 방식으로 임대되며, 이후 한국 회사가 SPC로부터 선박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립적인 기술 품질보증 기관의 선택을 두 곳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자산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 재정지원 및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국과 외국 선주 모두의 서비스 제공자 선택을 제한하고 해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기국 선박에 대해 안전 인증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외국 기국 선박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미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선급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 안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급사 배제는 경쟁을 위축시키고,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업계의 모범 사례 준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외국 선박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해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BCHP 및 외국 기국 선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를 선박안전법상 지정 인증기관 의무 사용과 연계하는 관행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개정

4.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과 관련된 외국 선급 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이슈 요약
현재 선박안전법 정책은 한국 선주들이 기술적·운영적·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선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급 선택을 KR과 BV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양자 독점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선급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 서비스 품질, 안전이라는 글로벌 해사 산업의 핵심 동력을 뒷받침하는 공정 경쟁을 훼손합니다.

선급 선택권을 KR과 BV로 제한하는 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선주들의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글로벌 기술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NV, ABS,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 등 주요 국제선급연합 (IACS) 회원사들은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선주와 용선자들이 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급사를 배제하는 것은 기술적 효율성, 대응력,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용선자, 특히 석유 메이저와 가스 개발사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IACS에서 선박을 검증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LNG 운반선들은 용선자의 요건과 BBCHP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대체로 이중 선급 체제(예: KR + DNV, KR + LR)로 건조됩니다. 이 정책은 이미 해사 가치사슬 전반에 상당한 운영 및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한국 선주들은 복수의 규제 체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 조선소는 신조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다양한 선급 규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 기자재 공급업체와 제조사는 시험, 문서화, 인증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유럽해사안전청(EMSA)와 IACS가 도입한 새로운 거버넌스

요건하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신조선 설계 및 건조 단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의 사항

1. BBCHP 프로그램에서 선급을 승인할 때 안전 실적, 기술 전문성,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등 측정 가능한 기준에 기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선별된 IACS 회원사가 엄격한 모니터링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박안전법을 재검토하고, 국제 모범 사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개정

신혜원
매니저
지속가능성
위원회

지속가능성

1

주요이슈

1. 지속 가능 인프라 투자 효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 (KPI) 구축

이슈 요약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지속 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통된 성과지표(KPI)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국제 공시기준 (예: ISSB, CSRD 등)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업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투자 성과를 계량화하고 국제 공시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도 국제기준과 정합성 있는 KPI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1. 지속 가능 인프라 프로젝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 KPI 체계 수립 (예: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량, 순환자원 사용 비율 등)
2. 국제 공시기준(ISSB 등)과 연계 가능한 지표 체계 설계
3. KPI 기반 성과에 따라 정부 인센티브(세제 혜택, 보조금 등) 연계 적용
4. 성과에 대한 정기적 공개(예: 분기별 보고)를 통한 신뢰 제고 및 국제 협력 기반 마련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러한 사안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해 한국 정부와 EU 대표부와의 구체적인 대화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속 가능 전환 계획 관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기후적응과
개정

7

총 주요이슈

1.

국세청(NTS)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통지 및 납부 유예 구제 신청의 어려움
- 이슈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42조는 납세자가 법령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 'MAP')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세청과의 MAP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시하는 데 상당한 실무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MAP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 구조적인 지연이 지속되어 조세조약 관련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있습니다. 동 조항은 MAP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대 3개월의 심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은 원칙적으로 사전적이고 분쟁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사전가격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절차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일 수 있으나, MAP의 경우에는 수용 시점이 실무상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유연성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국조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MAP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와도 일치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국세청 MAP 담당관실은 사전 결과통지서의 발부만으로는 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며, 그 결과 납세자가 조세조약 관련 쟁점이 명확히 내포된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더라도,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최종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MAP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은 납세자가 보다 이른 절차 단계에서 조세조약상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납세자가

최종 고지서 수령 전 심사절차인 과세적부심사(Review of Appropriateness of Tax Imposition, 이하 'RATI')를 신청한 경우에 두드러지며, RATI 절차는 MAP 신청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별도의 절차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최종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절차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협소한 해석은 국조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실효성도 크게 저하시킵니다. 동 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최종 고지서 수령 전 상호합의가 개시될 경우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지서 수취이후 30일 이내인 납부기한 이전까지 상호합의가 개시될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의 두 가지 중첩된 한계로 인해 실무상 거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국세청의 실무운용: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최종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MAP 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동 고지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짧은 시간적 간격: 설령 국세청이 예외적으로 결과통지서를 근거로 MAP 신청을 수리하더라도, 결과 통지서와 최종 고지서 사이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불과하므로, 그 짧은 기간 내에 MAP 신청서를 준비하고 상대국 권한당국과의 절차를 개시하여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국세청이 조세조약 상대국과의 협의 하에 MAP을 신속하게 개시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국조법이 보장하는 구제수단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보다 실질적이고 조세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MAP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MAP 담당관은 결과통지서 또는 조세조약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타 명백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MAP접수를 실무적으로 허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령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으며, 국제 조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납세자의 현금흐름 및 리스크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세조약상의 구제수단이 단지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구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건의 사항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 실무를 조정하여 납세자가 보다 조기에 MAP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MAP 신청을 조기에 수리하게 되면 납세자는 고지 및 납부에 대한 유예 신청 등을 보다 적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 조정 이 없을 경우, 납세자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법률상 명시된 권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도 개정하여 납세자의 MAP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수리 여부를 지체 없이, 또는 신속하게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명문화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한편,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의 사용료 과세

이슈 요약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매입 대금을 ‘노하우 이전으로 발생하는 로열티’로 간주하여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 유통 자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관행은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의 사업 모델이 국내 사용자(기업 또는 개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조세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노하우가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노하우를 양수한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복제하고 배포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통업체가 노하우를 활용하는 예는 드뭅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 주석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전 거래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양수자가 프로그램의 사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특정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고 강조합니다

건의 사항

국세청 과세 관행의 문제점은 OECD 모델 주석 유보 의견 31.1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나 매체를 통해 해외 기술 이전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위 OECD 모델 주석의 강조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OECD 모델 주석 유보 의견을 삭제하고 현행 소프트웨어 지급 관련 법인세법 기본 지침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9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1...8 ● OECD 모델주석, 제12조 observation 31.1
------	---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사전 승인(APA) 신청과 세무조사의 관계

이슈 요약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사전 승인(APA)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APA가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APA 대상 기간의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A가 신청되었다라도 타결 전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서 APA 신청 대상 국제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제 거래에 대한 중복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APA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비효율과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APA 신청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건의 사항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APA가 신청된 경우, APA 대상 기간의 국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이슈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이전가격 문서화를 적시에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허용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추가 세액 산정에 대한 10%의 가산세와 관련이 있으며, ‘적시’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BEPS 보고 대상(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세무 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화가 적시에 준비되었고, 그러한 문서화를 준비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납세자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세무조사관이 문서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재량권이 있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 면제 여부의 불확실성은 BEPS 보고서 대상 납세자에게는 덜 흔합니다. BEPS 보고서는 제출 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BEPS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자가 문서화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과세 관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의 사항

BEPS 보고서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가격 문서화 제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적시에 문서화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고, 세무조사관이 이전가격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국조법 제16조 제2항에서 BEPS 보고서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국제 거래명세서 등의 이전가격 관련 서식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전가격 보고서 또한 동일 기한 내에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 확장

이슈 요약

현행 관세법상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 근거 조문은,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의해서 '어떠한 물품을 실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심사 신청 제도의 본질적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제도를 해석한다면 사전 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는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 수준(가령, 경험세면 간 현격한 세율 차이, 불분명하거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포한 통관 요건 등)의 물품을 수입하여야 사전 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과 수입 또는 수출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무역 가시성(可視性)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CBP)은 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물리적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기 전에도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현행 해석은 비교법적으로도 글로벌 실무와 정합성을 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의 사항

해당 조항이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해당 조항을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고려 중인',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 심사 신청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86조 제1항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세청 법무담당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이슈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 조 제 1 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 규모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단기간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환산 대상 납세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가급적 해당 과세연도 동안 충분한 기간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로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이슈 요약

A.T.A 까르네란 전시 및 박람회용 물품, 상품 견본 등을 관세 납부 없이 국내 일시 수입 등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해당 용도로 사용 후 국외 반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시 반입 후 까르네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의 용도 외 사용 승인과 유예된 관세 납부가 필요한데, 이때 어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 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를 전제로 해서 일시 반입 당시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용도 외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인 까르네 물품의 경우 제 31 조 내지 제 34 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35 조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규정할 법령이 없어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관청은 해당 물품이 물리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시점에 결정되어 있는 까르네 증서상 가격을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담보 금액 설정을 위한 명목상 가격일 뿐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적인 기초가 되는 실제 지급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의 사항

현행법상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기초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가격(실제 지급가격)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수입자가 지급한 실제 지급가격이 있는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관세법 제35조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재건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5 이슈 분류

정책 건의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 ECCK 백서는 규제 성격과 정책 환경에 따라 이슈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입 및 통관
- 국제표준 및 적합성
- 공정경쟁
- 법령 집행 및 제재
- 기타 규제 장벽

조치현황: ✨ 신규 ⬆ 개정 ↻ 재건의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항공 및 방위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소통 방식 개선	⬆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장착 고지 의무 관련 처벌 규정 완화	✨	✈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의 처벌 규정 완화	✨	✈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	🛡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 마련	⬆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건 완화	✨	✈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제도 추진	✨	🚫
주류	주류 소매 면허자에 주류 전자상거래 및 배송 기회 확대	⬆	📄
	주류 용기 음주 관련 경고 문구 규정에 대한 의견	✨	✈
	발효 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	✈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화학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 중복 규제 해소	↻	✈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	✈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	📄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	🌐
	선임 신고증 사본 전달 간소화 요청	✨	✈
화장품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	🌐
	화장품 표시 기재 중 해외 제조원 표시 개선	✨	🌐
디지털	EU에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된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선	✨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	📄
에너지 및 환경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법안 제안	⬆	🌐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	✈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	✈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	✈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육상 송변전설비 건설 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적용	✨	✈
	민간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의 전원개발촉진법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수립	✨	✈
	부유식 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	🌐

위원회 / 포럼	안건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패션 및 유통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	🌐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 수용성 심사 기준 구체화	↗	🔧
	생활용품 정보 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 구체화	🔄	🔧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방법	🔄	🔧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	🛡️
식품	가족제품 표시 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소통 방법 개선 요청	✳️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검사 결과 통지 개선	✳️	🚫
헬스케어	천연 향료 허용 범위 확대	✳️	🌐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	🌐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	🔧
	위험 분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	🔧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병원체 분자진단 현장검사 활용 확대	✳️	🏥
인사 및 준법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RUO)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추상적 확장에 대한 제한 필요	✳️	🔧
보험	자동차보험 피해자 본인 인증(QR) 법제화	✳️	🔧

위원회 / 포럼	안건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지식재산권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	↗	🌐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에 대한 가이드스 제공 필요	✳️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	🛡️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	🛡️
주방 및 소형가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	🔧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	🔧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	🌐
해양산업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
	유사 디자인(lookalike, 통칭 ‘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
보험	시장조사용 견본품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확대	✳️	🔧
	기구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개선	🔄	🛡️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선언 등록 기한 변경 요청	✳️	🔧
보험	한-EU FTA EUR 6,000 수출 인증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 및 무역 왜곡 가능성—기준 현대화 제안	✳️	🛡️
	해상풍력촉진법(OSW Promotion Act)하의 규제 명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 지원 제도의 공정 경쟁 촉진	↗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과 관련된 외국 선급 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	🌐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 인프라 투자 효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KPI) 구축	↗	🌐
조세	국세청(NTS)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통지 및 납부 유예 구제 신청의 어려움	✳️	🔑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의 사용료 과세	✳️	🌐
	사전 승인(APA) 신청과 세무조사의 관계	✳️	🔑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	🔑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 확장	✳️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	🔑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	🛡️

출입말

출입말

국문

ABS
APA
AREC
ART
A.T.A. Carnet

미국 선급협회
사전가격합의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체 보험
일시 면세 통관증서

BBCHP
BEPS
BPR
BV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살생물제품 규정
뷰로 베리타스

CBI
CPS
CLP
CO₂
COD
CODEX
CSAP
CSRD

영업비밀 물질
핵심 플랫폼 서비스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 규정
이산화탄소
상업운전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DLP
DMA
DMCC
DNV
DPP

정보 유출 방지
디지털시장법 / 디지털 플랫폼법 (2025)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
노르웨이 선급협회
디지털 제품 여권

EBL
EcoAS
EDR
EDR
EEZ
EMS
EMSA
ESG
ESPR
EUIPO
EV

발전사업허가
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기록장치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우편물
유럽해사안정청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
지속 가능 제품을 위한 생태 설계 규정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전기차

FAS
FEMA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
미국 향료추출물제조자협회

국제경제

줄임말

줄임말	국문
FTA	자유무역협정
FC	금융 종결
FDI	외국인직접투자
FOW	부유식 해상풍력
GDP	국내총생산
GHG	온실가스
GH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MP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HCP	의료진
HR	인적 자원
HS	조화 상품 코드
IACS	국제선급연합
IARD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연합
IBP	적응증별 환급률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CH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CT	정보통신기술
ID	사용자 식별자
IOFI	국제향료산업기구
IPC	혁신형 제약 기업
IP	지식 재산
IPR	지식재산권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EC	기술 기준
KESC	검사 기준
KMS	한국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KPI	성과지표
KR	한국선급
LCIT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NG	액화천연가스
LoC	확인 관련 서류
LR	로이드 선급
MAP	상호 합의 절차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줄임말

줄임말	국문
N2SF	국가망보안체계
NHI	국민건강보험
OS	운영체제
OR	유일대리인
OSHA	산업안전보건법
OSW	해상풍력
PCR	유전자 증폭
PED	대통령령
PIC/S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QR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QSAR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 모델
RATI	과세전적부심사
R&D	연구개발
RCS	글로벌 스마트폰 메시지 표준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ACH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
RIFM	향료소재연구소
RO	안전 인증 기관
RSA	위험분담계약제
TRT	실시간 출하 시험
RUO	시험연구용
SME	중소기업
SoC	위해우려물질
SPC	특수목적회사
SSA	선박안전법
TSO	송전사업자
U.S.C.B.P.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VAT	부가세
WAP	가중평균가격
WHO	세계보건기구

기관

기관

줄임말

국문

	부산중부경찰서
CNGGC CVCI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평가분류원
DAPA DREC	대구중부경찰서 방위사업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ERC	전기위원회
FSC FSS FTC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ATS KCS KCSC KEPCO KESCO KFTC KIIP KIPO KISA KOMSA KNPA KPSA KPX KRIT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한국제품안전협회 전력거래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ME MFDS MOEF MOEL MOF MOHW MOJ MOLIT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관

줄임말

국문

MOTIE MSIT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HIS NICS NIER NIFDS NIS NTS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RRA	국립전파연구원

기관별 안전 리스트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부산중부경찰서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84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속 가능 인프라 투자 효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 (KPI) 구축	97
대구중부경찰서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84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소통 방식 개선	26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소매 면허자에 주류 전자상거래 및 배송 기회 확대	34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법안 제안	51
금융위원회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	78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에 대한 가이드نس 제공 필요	79
금융감독원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에 대한 가이드نس 제공 필요	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67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69
	위험 분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86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건 완화	31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60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81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81
	한-EU FTA EUR 6,000 수출 인증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 및 무역 왜곡 가능성—기준 현대화 제안	92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 확장	102
한국전력공사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53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54
	민간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의 전원개발촉진법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수립	5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8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86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50
경찰청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제도 추진	32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83
전력거래소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5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소통 방식 개선	26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정보 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 구체화	59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방법	60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가족제품 표시 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61
특허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82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85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86
	유사 디자인(lookalike, 통칭 ‘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86
기획재정부	발효 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37
	위험 분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71
	국세청(NTS)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통지 및 납부 유예 구제 신청의 어려움	98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의 사용료 과세	100
	사전 승인(APA) 신청과 세무조사의 관계	101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101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 확장	10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102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103
고용노동부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39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40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42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43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선임 신고증 사본 전달 간소화 요청	44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추상적 확장에 대한 제한 필요	75
환경부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의 처벌 규정 완화	29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29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39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40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41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45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RUC)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73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선언 등록 기한 변경 요청	90
	지속 가능 인프라 투자 효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KPI) 구축	9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 기재 중 해외 제조원 표시 개선	48
	EU에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된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선	49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소통 방법 개선 요청	6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검사 결과 통지 개선	64
	천연 향료 허용 범위 확대	65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67
	기구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개선	89
보건복지부	주류 용기 음주 관련 경고 문구 규정에 대한 의견	36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67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69
	위험 부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71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병원체 분자진단 현장검사 활용 확대	72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RUO)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73
법무부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85
국토교통부	사고기록장치 장착 고지 의무 관련 처벌 규정 완화	28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 마련	30
	자동차보험 피해자 본인 인증 (QR) 법제화	77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57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 수용성 심사 기준 구체화	58
	해상풍력촉진법(OSW Promotion Act)하의 규제 명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93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 지원 제도의 공정 경쟁 촉진	94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과 관련된 외국 선급 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50
산업통상자원부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53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육상풍력 계속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53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54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육상 송변전설비 건설 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적용	55
	민간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의 전원개발촉진법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수립	55
	부유식 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56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RUO)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73
	한-EU FTA EUR 6,000 수출 인증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 및 무역 왜곡 가능성—기준 현대화 제안	92
	해상풍력촉진법(OSW Promotion Act)하의 규제 명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93
국회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85
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67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69
	위험 부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71
화학물질안전원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4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67
국립전파연구원	시장조사용 견본품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확대	89
국세청	국세청(NTS)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통지 및 납부 유예 구제 신청의 어려움	98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의 사용료 과세	100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80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5

주한유럽상공회의소